

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

議案 番號	
----------	--

發議年月日：1998. 10.

發 議 者：鄭東采議員

外 45 人

提案理由

1980年 5.18을 前後해 발생한 光州民主化運動과 關聯해 당시 被害를 당한 關聯者들에 대한 名譽回復과 被害補償이 이루어졌으나, 아직도 多數의 關係자들이 被害補償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補償申請기간이 짧고 弘報가 제대로 되지 않아 關係자들이 미처 申請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이에 追加로 申請기간을 주어 關係자들이 被害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申請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.

主要骨子

光州民主化運動 關聯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이 法에 의한 補償金·醫療支援金·生活支援金を 支給받고자 하는

공백

者は 大統領令이 定하는 ば에 따라 關係證明書類를 첨부
하여 書面으로 補償審議委員會에 補償金등의 支給을 1999
年 1월 31일까지 申請하여야 한다.(案 第8條)

공백

法律 第 號

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

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8條 第2項중 “1998年 1月 31日까지”를 “1999年 1月 31日까지”로 한다.

附 則

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.

공백

新·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
<p>第8條(補償金등의 支給申請)</p> <p>① 關聯者 또는 그 遺族으로 서 이 法에 의한 補償金·醫療支援金·生活支援金(이하 “補償金등”이라 한다)을 支給받고 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證明書類를 添附하여 書面으로 補償審議委員會에 補償金등의 支給을 申請하여야 한다.</p> <p>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1998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.</p>	<p>第8條(補償金등의 支給申請)</p> <p>① (現行과 같음)</p> <p>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1999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.</p>

공백